

『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,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 반영(안 제7조)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0조)
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
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